

고 소 장

고소인 1. 김 태 원
2. 윤 동 희

대리인 박 근 용

주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3층

연락처 : 723 - 505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피고소인 1. 김 홍 기
2. 김 중 환
3. 한 용 외
4. 조 두 현
5. 조 관 래
6. 이 학 수

위 피고소인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의 19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위 피고소인들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9. 3.

위 고소인 김 태 원
윤 동 희
대리인 박 근 용



고 소 취 지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 김태원은 1998년 11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라고 합니다)의 주식 100주를 1주당 금26,000원에 취득하여 위 삼성SDS의 주주가 되었고, 고소인 윤동희는 1998년 삼성SDS의 주식 100주를 1주당 금 18,000원에 취득하여 주주가 된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1999. 2. 25.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의 19에 소재하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라고 합니다)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2. 범죄행위의 개요

위 피고소인들은 삼성SDS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 삼성SDS와의 관계에 있어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회사와 그 주주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9. 2. 26. 위 삼성SDS의 지배주주이면서 대규모기업집단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의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금54,750원 - 금57,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던 위 삼성SDS의 주식을 시가 대비 약 1/8에 불과한 금7,150원의 행사가격에 총 3,216,738주(株)를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금230억원 상당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특수관계인들에게 합계 약 금1600억원 (=3,216,738 × (57,000-7150))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 삼성SDS 및 그 주주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바, 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의 죄에 해당하기에 이 점을 고소합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들이 발행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 및 그 인수인

피고소인들은 1999. 2. 25. 08:00 - 09: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의 19 일옥빌딩 24층에 있는 삼성SDS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제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첨부 '이사회 의사록' 참조)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삼성SDS가 1999. 2. 26.자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제20회)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삼십억원정(₩23,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4. 사채의 이율 : 년 8%
5. 이자지급 방법 : 매 3개월마다 당해기간 이자 후급
6. 원금상환 방법 : 만기일시 상환
7.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7,150원
 - 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 추후 유·무상증자 및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시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마.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함

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사. 신주의 납입방법 : 현금

아.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다.

8. 청약일 : 1999. 2. 26.

9. 인수자 : SK증권(주)

10. 기타 : 관계기관의 조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피고소인들은 삼성SDS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이사회결의를 함에 있어 그 인수인을 당초에 SK증권(주)로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는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 인수인은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자녀등 특수관계자인 점이 밝혀진바, 실질적 인수자 및 그들의 인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첨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조)

(단위 ; 천원)

인수자	관계	인수가격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계
이재용	이건희의 자	4,458,890(20.4%)	241,110(20.4%)	4,700,000
이부진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서현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윤형	이건희의 녀	3,225,580(14.8%)	174,420(14.8%)	3,400,000
이학수	삼성전자 대표이사	5,122,980(23.5%)	277,020(23.5%)	5,400,000
김인주	삼성물산감사	2,561,490(11.7%)	138,510(11.7%)	2,700,000
계(6명)		21,820,100(100%)	1,179,900(100%)	23,000,000

2.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부당성

(1) 피고소인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결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세금부과를 위하여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1주당 금7,150원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위 삼성SDS의 주식은 피고소인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인 1999. 2. 26.경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던 주식이었으며, 또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가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주식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1999. 2. 26. 이전 1개월간 위 삼성SDS 주식은 주당 금 54,750원 -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인터넷거래가격표'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0윤이 1994. 4.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신촌사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3. 12.경 원고 이0혁이 소외 승0선 소유의 주식 100주를 주당 금 50,000원에, 1994. 6.경 소외 이0근이 소외 신0중 소유의 주식 148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라고 하여 거래회수 2회, 거래량 248주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사례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그 외 다수)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을 동법상의 시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그 사례가 다수 있어 이미 판례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② 더욱이 최근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 대표이사들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지역의 대표적 벤처기업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맥소프트뱅크(이하 ‘맥소프트’라고만 합니다)에서는 2000. 2. 15. 총액 6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때 전환가격을 3,000원으로 정하여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였는데, 위 전환사채발행당시인 1999. 12. 중순경부터 2000. 2. 중순경 사이에 걸쳐 장외시장에서는,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약 10,000원 - 27,000원의 가격으로 수차례의 장외거래가 있었으며, 또한 인터넷상의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인 피스톡

(www.pstock.co.kr)등에는 위 전환사채 발행 전후인 2000. 1. 1.부터 같은해 4. 15. 사이에 위 회사 주식의 시세가 15,750원 - 50,000원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2001. 2. 9.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00고합910 판결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절한 가격에 이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의 주식의 당시 장외거래가격인 25,000원 기준 약 8.3분의 1인 ‘전환가격 3,0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대표이사가 위 두 가격간의 차액만큼 이익을 취득하고 위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위 맥소프트의 대표이사와 주식 관리책임을 지는 이사 1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2001. 5. 30.에는 그 항소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01노189 판결도,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 당시 맥소프트 주식의 거래실태와 거래가액, 인터넷상의 시세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렵에 이루어진 맥소프트 주식의 매매사례 중 적어도 1주당 10,000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맥소프트 주식의 적절한 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같은 피고인들의 배임죄를 인정하여 역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첨부 ‘판결문’ 각 참조)

(2) 한편 피고소인들은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우리사주 주식중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퇴사직원이 보유한 극소량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향후 그 회사의 발전가능성과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의 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시장가격입니다. 그리고 앞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았듯이, 단지 소량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된 거래 의사를 가진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된 것이라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SDS의 경우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우리사주를 주로 하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18.3%였고, 이것이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원용하여 시가를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격을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시가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② 이 점에 대해서는 앞의 맥소프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도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면서 “당시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맥소프트 주식에 대한 거래가 1주당 8,000원 내지 20,000원 상당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단발적이고 개인적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로 내세운 항소이유에 대해 위 항소심 판결은, 위 전환사채발행 당시의 장외거래 사례들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보아 그 매매사례의 거래가격 중 적어도 1주당 10,000원은 위 전환사채발행 당시 맥소프트 주식의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은 또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같은 대량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수히 존재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정한 프리미엄만 제공했다면 당시에 얼마든지 이 건 사모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금융기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일시적인 대량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자로서는 시장에서 물량을 조금씩 내다팔아 일시적인 매물출회에 따른 가격하락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고 주식의 가치를 따지는데 아무런 고려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4) 나아가 국세청에서도 2001. 4. 11.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결정된 위 행사가격이 당시 삼성SDS 주식의 적정한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여, 그 차액만큼을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적 인수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습니다.(첨부 '조사결과회신' 및 '관련신문기사' 참조)

결국 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처음부터 부당하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배임의 고의

(1) 피고소인 또한 위 삼성SDS의 거래가격이 1999. 2. 26.경에 주당 금 54,750원 - 57,000원에 이른다는 사실 및 장차 그 거래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등 위 삼성SDS 주식사무 담당자의 각종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피고소인 김홍기(삼성SDS 대표이사)는 1999. 1. 22.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002년 목표로 추진했던 상장계획이 외자유치를 통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박주완 재무담당 상무도 “삼성SDS는 상장조건 중 잉여금이 납입자본금 600억원의 2배인 1,20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 외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자의 일부는 차입금을 갚는데 쓰고 일부는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총 잉여금을 1,200억원으로 늘리면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연합뉴스 1999. 1. 22.자),

같은 김홍기는 1999. 6. 3. 삼성SDS의 대표이사로서 21세기비전 ‘디지털피아21’이란 제하의 경영목표를 선포하면서, “삼성SDS가 굵직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는 등 수주액만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은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상이익도 경영계획치인 350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경영호조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코스닥 또는 직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자신문 1999. 6. 4.자),

이상과 같이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1999. 2. 26. 이전부터 코스닥등록을 추진하여 왔다면 피고소인들은 응당 삼성SDS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주당 54,750원 - 5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등록을 위해서는 절차상 주식의 공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공모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일응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거래가격이 주당 54,750원 - 57,000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1/8가격에 불과한 금7,150원에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 점에서 이건 피고소인들의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피고소인들이 적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될 수 밖에 없는 평가방법입니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뿐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산평가방법은 명확해야 하고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세목적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을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래인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사모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마땅히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경영수탁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SDS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의 하나로서,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장외시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삼성SDS 주식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회사 경영진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삼성SDS가 매출,이익등의 모든 면에서 경영호조를 달리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에는 코스닥 등록이 예정되어 주식의 거래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척으로서도 당연히 이러한 시장의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신주인수권의 인수가격을 협상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까지 했던 피고소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의 객관적 정보를 전혀 무시하고, 세금부과목적상 가격문제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 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격을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채택하였으니, 이것은 곧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조건으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소인들이 경영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명백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 앞서 살펴 본 맥소프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는, “당시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맥소프트 주식의 평가액이 986원 내지 1,261원임에 비추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시에 결정된 전환가격 3,000원은 적정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들은 맥소프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전환가격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환사채는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적정한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 당시 주식의 거래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은 당시 맥소프트 주식의 적정 거래가액인 10,000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인 3,000원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본인인 맥소프트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보수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자체를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으로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들의 임무 위배의 점은 더더욱 명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국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등 이견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단지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원용하여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소인들의 배임의 고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 피고소인중 특별히 '이학수'는 다른 피고소인과 달리 이견 삼성SDS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스스로 인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위 이학수는 삼성SDS의 감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피고소인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감시, 감독할 책임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기는커녕 삼성SDS의 주식을 시가대비 1/8의 싸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행당시를 기준으로 약 금36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배임 혐의가 다른 피고소인에 비하여 특히 농후한 바, 특별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이견 피고소인들은, 삼성SDS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직에 있었던 자들로서, 삼성SDS주식이 주당 54,750원 -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1/8의 가격에 불과한 주당 7,150원의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견회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발행 당시 총액으로 약 금1,6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한편 삼성SDS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

므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충분한 행위로 보아 고소하는 바이오니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참고자료 1	고소인 잔고 내역서
참고자료 2	이사회 의사록(삼성SDS)
참고자료 3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질의서, 조사요청서, 보도자료
참고자료 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고자료 5	삼성SDS등 비상장주식 인터넷거래가격표
참고자료 6	부산지방법원 2000고합910 판결문
참고자료 7	부산고등법원 2001노189 판결문
참고자료 8	서울고등법원 2000누4790 판결문
참고자료 9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263 판결문
참고자료10	국세청 조사결과회신
참고자료11	관련 신문기사
참고자료12	법인등기부등본(삼성SDS)
참고자료13	감사보고서('98)
참고자료14	사업보고서('98)

서울지방검찰청 귀중